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
------	----

2018. 9. 5.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 9. 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강태웅)

- 기금의 존속기한(2018. 12. 31.) 종료 예정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나. 대외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1)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2005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음(참고자료 1).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한 ‘국내협력계정’과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음2).

---

1)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2) 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국내협력계정은 2007년 각각 설치되었음.

- 지난 5년간 ‘국내협력계정’의 경우,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운영을 포함해 매년 10여건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과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음(참고자료 2).
- 2018년도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의 운용 규모는 각각 다음의 <표>와 같음.

**<2018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 국내협력계정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8,209	8,464	255	합 계	8,209	8,464	255
일반회계 전입금	2,760	2,760	-	비용자성 사업비	5,257	5,257	-
공공예금 이자수입	67	67	-	기본경비	3	3	-
예치금회수	5,382	5,637	-	예치금	2,949	3,204	255

– 국제협력계정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5,072	5,945	873	합 계	5,072	5,945	873
일반회계 전입금	3,000	3,000	-	비용자성 사업비	2,631	2,731	100
공공예금 이자수입	63	63	-	기본경비	5	5	-
예치금회수	2,009	2,882	873	예치금	2,436	3,209	773

- 국내협력계정은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을 비롯한 9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52억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9%의 예산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2018년 국내협력계정 사업집행 현황〉

(8월 13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 계	5,257	2,573 (49%)	
1.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150	74 (49%)	
2.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450	284 (63%)	
3.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	
4.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250	17 (7%)	
5.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11 (50%)	
6.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320	148 (46%)	
7.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 숲 조성	250	249 (99%)	
8.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2,420	1,395 (57%)	
9. 평창 동계올림픽 시내버스 광고	395	395 (100%)	1월 신규편성

- 국제협력계정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비롯한 9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약 27억 3천 1백만원의 예산을 수립 하였으며, 8월 현재 3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국제협력계정 사업집행 현황〉

(8월 13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 계	2,731	980 (35.9%)	
1.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47	382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65	249	
3.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	34	
4.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20	-	
5.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70	-	
6.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670	257	
7.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불용소방차 지원)	90	1	
8.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100	-	8월 추가편성
9.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500	57	

-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대외협력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의 계정별 예산 집행률은 국내협력계정이 88%, 국제협력계정이 70% 수준으로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집행률 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그 동안 대외협력기금은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지원을 제외한 각종 사업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특히, 조성 이후 현재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는 별다른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실상 일반회계와 같은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다. 기금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

- 기금은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 제한 등을 위해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정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여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금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우선, 대외협력기금은 각종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고, 각종 고유목적 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외 각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각 계정이 추진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으로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현재 기금으로 추진 중인 대다수의 사업은 그 종류나 추진주체, 예산 집행 형태 등의 측면에서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회의 재정 통제를 포함한 기금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다만, 기후변화, 정치·경제적 급변 등과 같이 예산사업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는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함.
- 아울러, 매년 출연금으로 해당 사업비를 충당하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기금 운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여건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점에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됨.
- 결국, 대외협력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운용실적,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가능성,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해야 하며, 기금의 존속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사업변경의 최소화와 함께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자원 확보 방안 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용역·자문”을 “용역·자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u>광역시·도·특별자치도</u> 및 <u>시·군·구</u>(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 ① ----- ----- ----- <u>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8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3년 12월 31일</u>----- -----.</p>
<p>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 ----- -----.</p>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1. -----

용역·자문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